제332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

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의 안 번 호	2946

김경 의원 (더불어민주당, 강서1)

□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 김경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이 발의한
「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현재 서울시에서는 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‘시·도 환경교육계획 수립’ 의무에 따라,
5년마다 ‘서울특별시 환경교육계획’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.

□ 이에 안 제4조제2항에 ‘지역 특성과 여건의 반영’ 및 ‘이행평가 결과의 환류’를 신설하고, 상위법에 근거해 제도를 정비함으로써
‘서울특별시 환경교육계획’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.

□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,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